

|   |                   |      |             |
|---|-------------------|------|-------------|
|  | <h2>해외연수운영규정</h2> | 규정번호 | 3-4-18      |
|   |                   | 제정일자 | 2006.11.13. |
|   |                   | 개정일자 | 2020.06.01. |
|   |                   | 개정차수 | 4차          |
|   |                   | 소관부서 | 국제교류문화원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재학생들의 해외연수(이하 “연수”라 한다) 운영과 학점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수라 함은 국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실습·인턴십·취업연수과정 등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제3조(인정기관) 대학과 해외 연수 협정을 맺은 해외 기관 또는 정부에서 승인한 기관으로 한다.

제4조(지원자격) 해외 연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이하 “지원자”라 한다)은 대학재학생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학과장의 추천에 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지원 할 수 있다.

1. 대학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총 취득한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3. 적절한 어학능력을 갖춘자
4. 학칙에 의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졸업에 이상이 없는 자
6.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5조(선발기준 및 절차) ① 연수 지원자는 학과장 추천을 받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제교류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에 제출한다.

② 문화원은 선발된 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교무입학처에 제출한 후 협약기관에 파견한다.

제6조(파견기간) 연수 파견기간은 프로그램 기준 범위 내에서 총장의 허가를 얻어 파견 학기의 변동과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등록 및 의무사항) ① 파견학생은 연수기간 중 등록금을 대학에 납입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해외 기관 파견기간 중 소요되는 개인의 비용 일체는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대학에서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파견학생은 협약기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연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연수 종료 및 대학 복귀는 프로그램 기준에 따른다.

제8조(학점) 해외 협약 기관의 연수 실적은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또는 취득) 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학점 인정(또는 취득)은 당해 학기 해당학과에서 개설된 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또는 취득) 할 수 있다.
2. 문화원은 해당학과와 협의하여 해외 기관으로부터 제출되는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성적부여 기준을 포함하는 교육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해외 파견학생이 수강신청 한 필수과목이 해외에서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교내의 원격교육 등을 통하여 이수할 수 있다. 이때 별도의 교육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4. 해당학과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각 개별과목 별로 성적을 부여하여 교무입학처에 제출하고, 교무입학처는 이를 근거로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부여한다.

5. 해외 파견학생의 연수 과정이 개별적으로 학점을 취득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개별 학점의 부여 없이 총 20학점으로 학점만 인정한다. 이때 연수 학생에 대하여 당해학기 필수과목 이수 의무를 면제한다.

6. 연수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석차 합산에서 연수학기를 제외하며 해당학기 성적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제9조(학점인정 제한) ①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연수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총장의 허가를 사전에 득하지 아니한 연수는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③ 연수기간 중에 대학 학생의 신분을 이탈하여 불성실하였거나 불미스러운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학점의 인정을 제한하고 대학 학생상벌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원 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범위) 연수비 지원은 프로그램 기준에 따르며,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0총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 년 11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변경) 이 규정의 변경은 국제교류문화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학사내규에 의하여 시행중인 학점교류의 운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2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6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